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6

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: 강선우·홍성국·이수진

남인순 · 서영석 · 김영호

정청래 • 윤미향 • 맹성규

송갑석 · 오영환 · 전용기

김경만 · 김남국 · 안규백

고영인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, 노인학대가 종료된후에도 가정방문, 시설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·지원하고, 노인이 가정이나 노 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 •교육 등을 의무화하고,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·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노인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 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 도록 강제함(안 제39조의16).
- 나.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 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 설).
- 다.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(안 제39조의20제5항 신설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16의 제목 중 "권고"를 "제공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"를 "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권고하는"을 "제공하는"으로, "이에 협조하여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"를 "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"로 한다. 제39조의19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, 지방변호사회 또는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제39조의2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1조의2제1항 중 "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
- 2.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- 2의2.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39조의16(노인학대행위자에 제39조의16(노인학대행위자에 대 대 한 상담・교육 등의 권고) ① 한 상담・교육 등의 제공)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・교 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있다.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 (2) ----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 •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 ---제공하는-----정당한 조하여 상담 • 교육 및 심리적 사유가 없으면 상담・교육 및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.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. 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 전용쉼 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 전용쉼 터의 설치) ① (생 략) 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 (2) ----와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2의2.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 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 협회, 지방변호사회 또는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 3. ~ 5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39조의20(노인학대의 사후관리 제39조의20(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

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 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<신 설>

<신 설>

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 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1조의2(과태료) ① 제39조의17 제61조의2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

- 1.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 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 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 관의 장
- 2.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・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-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거나 방해한 자

- 2 -----
- _____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제39조의16제2항을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받지 아니한 자
- 3. (현행과 같음)
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